

# 광운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「대학원생 권리장전」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 가운데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, 대학원 구성원들이 지적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아 석·박사 학위과정에서 학생, 연구자 및 조교로서 갖는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권리장전은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기본원칙)** ① 대학원생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.  
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며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.  
③ 대학원생은 국적, 나이, 성별, 장애, 종교, 학력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.

##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

**제3조(자기 결정권)**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, 가족생활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.

**제4조(학업연구권)**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,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-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, 학업, 훈련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  
③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내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  
④ 대학원생의 석·박사 학위취득 과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.

**제5조(저작권)**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이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경우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
**제6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, 평가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평가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.

**제7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권리장전에 명시된 내용의 제도화 및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, 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**제8조(조교의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이 학습조교, 연구조교,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 또는 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, 근로내용, 임금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.

**제9조(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학과, 전공, 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 학과, 전공, 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.

###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

**제10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**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**제11조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**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므로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가 휴직,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제②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고 대학원장 등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

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2조(해결절차)** ① 대학원생이 제11조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문제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.

**제13조(대학 구성원의 책무)**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권리장전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의무를 가진다.

② 대학원 구성원은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그 밖의 권리)** 대학원생의 권리는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.